

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,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※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 재원(안 제2조)
 -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
 -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재원으로 함
-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(안 제4조)

-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,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,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○ 안 제2조에서는

-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
-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함.

○ 안 제4조에서는

- 지방세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되,
-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.

금번 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1부. 끝.